

##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9. 8. 26.(수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  
송도균 부위원장  
이경자 위 원  
이병기 위 원  
형태근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 - 가. 성원보고
  - 나. 국민의례
  - 다. 개회선언
 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## 바. 의결사항

### 1) (주)KT와 SK텔레콤(주) 간 착신과금(080)서비스 상호접속협정 변경인가에 관한 건 (2009-37-175)

-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주)KT와 SK텔레콤(주)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을 변경하고 인가를 신청을 해옴에 따라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4조의6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  - 착신과금(080)서비스 상호접속협정을 (주)KT가 SK텔레콤(주)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한 대가로 '상호접속료'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개정(상호접속 기준에 부합)
  - 종전에는 상호접속료가 아닌 요금수익의 50%를 KT가 SKT에 지불(수익배분방식)해 왔으나, '10. 1. 1.부터 상호접속료로 정산기로 협정 개정

### 2) (주)KT와 SK텔레콤(주) 간 C2P(Computer to Phone) SMS 서비스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(2009-37-176)

-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주)KT와 SK텔레콤(주)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고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4조의6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  - SK텔레콤(주)은 (주)KT의 C2P SMS가 상호접속 대상이라는 방통위 심결 결과('08.12.17.)에 따라 KT와 상호접속협정을 체결(상호접속기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상호접속 기준에 부합)

### 3) (주)KT와 (주)한국케이بل텔레콤 간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협정 인가에 관한 건 (2009-37-177)

-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주)KT와 (주)한국케이بل텔레콤이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협정을 체결하고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4조의6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  - 공동사용 대상설비는 통신망간 접속설비(관로, 케이블, 전주, 통신구 및 국사상면)와 상호접속에 필요한 부대설비(구내연결통로, 회선분배반, 전원설비, RACK 및 철탑)임.

- 한국케이بل텔레콤과 KT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공동사용 대가에 합의 하였으며, 협정체결시 적용된 대가는 KT가 설비공동사용 요청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요금표에 따르기로 함

**4) SK텔레콤(주), 舊 (주)KT프리텔, (주)LG텔레콤 및 (주)KT의 사망자 주민등록 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09-37-178~181)**

- o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SK텔레콤(주), 舊 (주)KT프리텔, (주)LG텔레콤 및 (주)KT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하여 사망자 주민등록 번호 등을 이용한 자를 가입시킴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(안)을 심의하였으나,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함.

**5) SK텔레콤(주), (주)KT(舊 KT프리텔), (주)LG텔레콤, (주)은세텔레콤 및 드림라인(주)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09-37-182~186)**

- o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함.

**6) '08년 4분기 및 연간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(2009-37-187~191)**

- o 김영관 편성평가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 제71조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7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58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「방송법」 제10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.

- o '08년 연간 편성비율 위반사업자

법 인 명	위 반 내 용	3년 이내 위반횟수	과태료 부과 기준	과태료 부과액
(주)챔프비전 [챔프]	▪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	3회	기준금액(1,000만원)	1,000만원

- o '08년 4분기 편성비율 위반사업자

법 인 명	위 반 내 용	1년 이내 위반여부	과태료 부과 기준	과태료 부과액
안동문화방송(주) [안동MBC]	▪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편성비율(5%이내위반)	-	기준금액(1,500만원)의 50% 감경	750만원
한국디지털위성방송(주) [키즈톡톡]	▪ 국내제작 편성비율(20%이내위반)	-	기준금액(1,000만원)의 25% 가산	1,250만원
(주)씨오브제이 [채널J]	▪ 국내제작 편성비율(30%이내위반)	-	기준금액(1,000만원)의 50% 가산	1,500만원
(주)홈티브이방송 [홈드라마]	▪ 1개국가 제작 영화 편성비율(40%초과위반)	-	기준금액(500만원)의 100% 가산	1,000만원

## 7) 『2009년 방송평가』 실시 계획에 관한 건 (2009-37-192)

- 김영관 편성평가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 제31조 및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, 방송사업자에 대한 2009년 방송평가 실시 계획을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  - (방송평가 대상 기간) 2008. 1. 1. ~ 12. 31.
  - (방송평가 대상 사업자)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보도·홈쇼핑 PP
    - 올해부터 지상파 및 위성 DMB사업자에 대해서도 방송평가를 실시
    - 지역 지상파DMB의 경우에는 13개 사업자중 '08년 전체기간 동안 방송을 실시한 5개 사업자에 대해 평가를 실시
  - (방송평가 영역) 내용, 편성, 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
  - (방송평가 절차) 방송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방송평가단에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, 이를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
  - (방송평가 방법) 2008년 방송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올해 방송평가에 대해 현행 방송평가규칙 적용
    - 각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점수화하는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되, 필요시 방송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
  - (방송평가 공개 여부) 위원회 홈페이지에 방송평가 결과 공개

## 8) (주)넥센의 (주)KNN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행위에 관한 건 (2009-37-193)

-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「방송법」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(주)넥센에 대한 처분을 심의하였으나,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함.

## 9) 한국방송공사(KBS) 이사 추천에 관한 건 (2009-37-194).....비공개

### 사. 보고사항

#### 1)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사항

-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'09년 방송법 입법계획('09. 3. 24 : 위원회 보고)에 따라 마련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원안대로 접수함.

## o 주요 내용

- ① (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)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모두 승인제로 운용하여 왔으나 다양한 시청자 요구를 적기에 반영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어, VOD 등 위원회가 고시하는 유료방송 선택형 서비스와 중계·음악유선방송의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(제77조)
- ② (직접 사용채널의 운영범위 규정)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정의·운영범위·직접사용 채널 운영계획서 제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, 직접사용채널 정의 및 직접사용 채널 운영계획서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, 하위 법령에서 직접사용채널의 운영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70조)
- ③ (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서류 접수창구 일원화) 방송사업자는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기업결합 신고일 경우 변경 승인 신청서와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정위는 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조항 신설(제15조의3)
- ④ (허가·재허가 등의 심사 기준 정비) 방송사업의 허가·승인, 재허가·재승인 심사 기준 중 방송사업별로 적용 곤란한 심사기준이 있으며, 세부심사사항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므로, 위원회가 방송사업별 특성에 맞는 허가·재허가 등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세부심사항목, 절차, 방법 등을 고시하여 행정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제10조, 제17조)
- ⑤ (방송사업 회계제도 근거 마련) 방송사업자가 재산상황공표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회계자료의 작성기준이 법률의 위임 없이 위원회 내부훈령으로 규정 되고, 제출된 회계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제출자료 신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, 내부 훈령으로 규정된 방송 회계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98조)
- ⑥ (신규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부과 근거 및 종편PP의 기금 부과 근거 마련) 신규 방송사업자 허가 및 승인 시 출연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근거규정이 미흡하고, 상당한 광고매출이 예상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종합편성PP)에 대해서는 방송 발전기금 징수 근거가 부재하므로, 방송사업 허가·승인을 취득한 사업자에게 납입 자본금의 10/100 범위 안에서 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종합편성 PP의 방송광고 매출액에 대해 6/100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37조)
- ⑦ (중계유선방송사업자<RO>의 채널운영 범위 조정)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 범위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방송(KBS, EBS의 위성방송)을 삭제하고, 필요성이 없어진 유효기간 삭제(제2조, 제70조제6항)

㉘ (한국방송공사 운영계획 작성방식 개선) KBS가 제출하는 운영계획서에 인력·조직·조직 시설 운영계획 등 위원회가 고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선(제58조)

㉙ (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미편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) 과거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과태료 조항 보완(제108조)

※ 과거 방송법 개정('06.10.27.) 과정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조항은 제69조제7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과태료 조항은 69조제7항으로 변경하지 않음

- 과태료 조항인 제108조제1항제4호의 “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”을 “제69조제3항 내지 제7항”으로 변경

㉚ (공익채널 미운영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)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SO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공익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조항이 없어 효과적인 법집행이 어려우므로 공익채널 미운영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(제108조)

## 아. 기 타

### 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○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09. 9. 2.(수) 15:30에 개최하기로 함.

## 6. 폐 회 (18:19)

※ 11:55 정회 15:30 속개, 16:35 정회 17:20 속개, 17:40 정회 17:53 속개